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금융행정체계 개편〉

■ 김현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771호)

2024. 11.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 병 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7
1. 개정안의 입법 배경 및 주요 내용	7
2.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 및 기능별 금융감독기구의 설립 ...	16
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 분리	20
나. 금융감독 기능별 분리 및 감독정책-집행의 일원화	22
1) 금융감독 기능별 분리	22
2) 감독정책과 집행의 일원화	26
3. 위원회 사무조직의 설치	28
4. 국무총리 소속 금융안정협의회 구성	31
5. 관계기관 간 협조 및 견제장치 마련	34
6. 금융감독기구에 대한 국회의 통제	40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현정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4. 9. 6.
3. 회 부 일 : 2024. 9.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KIKO 사태, 저축은행 사태에 이어 동양그룹 사태 및 사모펀드 사태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이르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 미흡에 따른 대규모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음. 이와 같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이루어진 현행 금융감독체계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실현할 수 없다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으며,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음.

현행 금융감독체계 하에서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원인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함께 수행하면서 금융산업의 육성 및 대규모 기업집단의 보호라는 금융산업정책을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기관 건전성이라는 금융감독

독정책을 외면할 수밖에 없도록 금융감독체계가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감독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집행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이 분리됨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검사 과정에서 제도개선 사항이 금융감독정책에 제때 반영되지 못해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확대되는 문제점도 야기함.

아울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금융기관의 영업행위 및 자본시장에 대한 감독을 포함한다)을 함께 수행함에 따라 그 간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간 이해상충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따라서 이러한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이 불가피함.

이에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의 분리를 통해 금융감독정책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금융감독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기구로 분리하며, 금융감독정책과 금융감독집행을 수장겸임 등을 통해 일원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과 별개의 기구로 신설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은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융소비자보호원이 각각 전담하도록 하는 새로운 금융감독체

계를 마련함으로써 금융감독의 독립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안 제3조).

나. 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국회가 추천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 1명·금융전문가 1명 및 대한상공회의소 추천 경제계 대표 1명을 포함하여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4조).

다.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관한 금융감독정책과 금융감독집행을 일원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의 예산·회계 및 의사관리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무조직을 금융감독원 내부에 두고,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을 겸임하게 함(안 제15조 및 제24조).

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분리·설치됨에 따라 그 집행간부 중 부원장을 2명 이내, 부원장보를 3명 이내로 축소하고,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건전성 관련 감독·검사·제재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사무처리·업무보좌로 함(안 제24조 및 제33조).

마. 금융기관의 영업행위와 자본시장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안 제47조).

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및 국회가 추천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 2명 · 금융전문가 2명을 포함하여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48조).

사. 금융기관의 영업행위 및 자본시장에 관한 금융감독정책과 금융감독집행을 일원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예산 · 회계 및 의사관리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무조직을 금융소비자보호원 내부에 두고,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을 겸임하게 함(안 제59조 및 제73조).

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기업회계의 기준 · 회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증권선물위원회를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내부에 설치함(안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

자. 금융소비자보호원 집행간부를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하는 원장, 부원장 3명 이내, 부원장보 6명 이내, 감사 1명으로 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업무를 영업행위 관련 감독 · 검사 · 제재, 자본시장 및 기업회계 관련 감독 · 조사 · 감리 · 제재 및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사무처리 · 업무보좌로 함(안 제73조 및 제81조).

차. 금융안정을 위한 최종 정책 결정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

융안정협의회를 둠(안 제95조).

카. 금융산업정책·통화신용정책 등과 금융감독정책의 조화를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 금융통화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재의요구권과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 금융감독위원회의 재의요구권을 마련함(안 제106조 및 제107조).

타. 금융 관련 법령 제·개정 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와 사전 협의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에 법령 제·개정 요청권을 부여함(안 제108조).

파.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융소비자보호원간 견제와 균형 및 금융회사 수검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기관 인·허가, 감독규정 제·개정, 검사계획 수립 시 미리 상호 협의하도록 함(안 제109조 및 제110조).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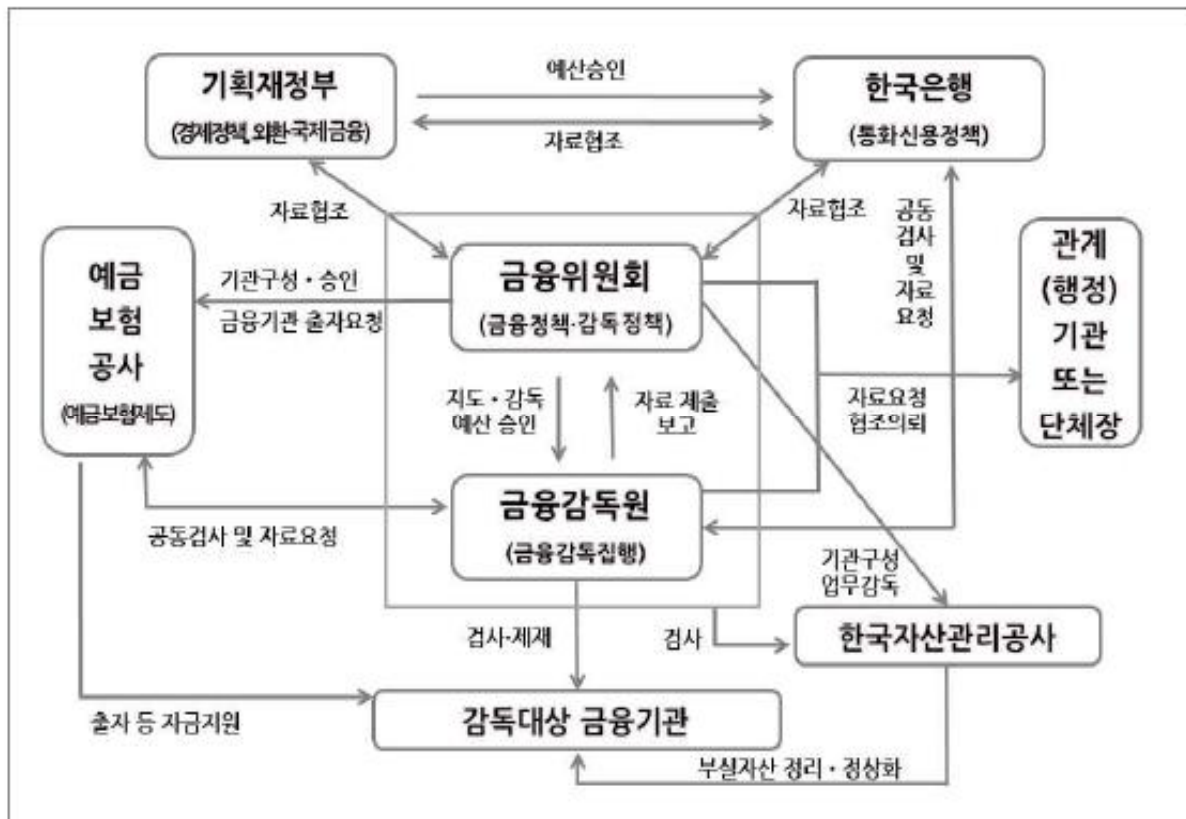
이 법률안은 김현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입법 배경 및 주요 내용

-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감독 구조는 금융위원회(금융정책·감독정책)와 금융감독원(감독집행)이 금융감독의 중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면서 기획재정부(경제정책·외환·국제금융), 한국은행(통화신용정책), 예금보험공사(예금보험제도 운영) 등 유관기관이 고유의 업무 수행 및 기관 간 협조 등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현행 금융감독 구조]



(자료: 감사원 감사보고서,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 2021.7.)

□ 현 체제는 2008년 2월 이후 구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기능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하여 금융감독기능을 금융위원회(정책)와 금융감독원(집행) 위주로 개편한 데에 따른 것으로,

-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 및 감독정책을 입안하고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영업정지·해임권고 등 무거운 제재를 의결로 결정·조치하며,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감독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기관경고·문책경고 등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가벼운 제재를 결정·조치하고 있음.

[현행 금융정책 관련 수행체계]

구 분	주요 기능	
기획재정부	국제금융	· 환율·외환시장 정책 · 국제수지·외환수급 · 국제금융 협력 · 외채·대외채권 관리 등
금융위원회	국내금융(감독)	· 금융정책 및 감독정책 · 자본시장 관리·감독 · 금융기관 설립 등 인허가 · 금융소비자 보호 · 금감원 지도·감독·외국환거래 건전성 감독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집행	· 금융기관 검사·감독 (업무·재산상황 검사, 회계감리, 증권 불공정 거래 조사 등)

주: 외국환거래법은 기재부 소관, 다만 외국환 거래 취급기관 건전성 감독은 금융위(금융감독원에 위탁) 소관
(자료: 행정안전부)

□ 금융정책 및 감독 관련 기능은 글로벌 금융위기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통합 또는 분리되어 왔는데, 최근의 금융행정체계 개편 연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¹⁾

○ 먼저 IMF 외환위기 이전에는 재정경제원(부총리)이 국내금융감독 집행 기능을 제외한 경제·금융정책 전반을 관장하였고, 금융감독 집행 기능은 업권별 감독원과 신용관리기금(저축은행 등 감독)에서 각각 수행하였으나,

○ 이에 대하여 재정경제원의 권한 비대화로 인해 부처 간 견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비판과 권역별로 분산된 감독기능이 금융감독 부실을 초래하였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 1998년 예산(기획예산처) 및 국내 금융감독 정책(금융감독위원회)을 거시정책·세제·금융정책 등 여타 기능(재정경제부)과 분리하고, 국내 금융감독 기능을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통합적으로 수행토록 하는 내용의 개편이 이루어졌음.

○ 그러나 1998년 개편된 금융행정체계는 금융정책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정책은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집행은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는 3단계의 중층적 구조로 인하여 각 기관 간 업무 영역이 중첩되고 금융정책업무와 감독정책업무 간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발생하여 조직 운영상의 비효율과, 특히 감독대상인 금융기관

1) 예산세제국고를 포함한 우리나라 금융행정체계 연혁은 【참고자료 1】 참조

의 부담 가중을 초래하고 금융시장의 갑작스러운 변화나 위기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곤란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음.

- 이에 2008년 개편된 현행 금융행정체계는 재정경제부(기획재정부)의 금융정책 및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권 등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하여 금융감독 단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함으로써 중층적 감독체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을 시정하고 책임성을 확보하는 한편, 금융정책과 감독집행 사항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의 직위를 분리하였음.

[금융행정체계 개편 연혁]

구 분		~1998.4.	1998.4. ~ 2008.2.	2008.2. ~
국제 금융		재정경제원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
국내 금융	금융정책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
	감독정책			
	감독집행	은행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보험감독원		
증권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비 고		재정경제원이 국내금융 감독기능을 제외한 경제·금융정책 전반 관장	통합감독기구 출범 (위원장/원장 겸임)	위원장/원장 분리

□ 그러나 현행 금융행정체계에 대해서도 ① 국제금융(기획재정부)과 국내금융 정책 기능(금융위원회)이 분리되어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 환경에 대응하여 시의적절하게 경제정책·외환정책과 국내 금융정책을 조율하기 곤란하다는 지적과,²⁾ ②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동시에 수행하면서도 금융정책을 우선함에 따라 엄정한 금융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그 밖에도 금융감독기구가 이원화됨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 정보교환 및 의사소통이 부족할 경우 금융감독 정책의 입안과 집행이 상호 조화롭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문제 등도 함께 지적되고 있음.

□ 개정안은 이러한 현행 금융행정체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여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³⁾ 금융감독 기능은 정책과 집행을 일원화하되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기구를 각각 구분하여 이른바 쌍봉형 감독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2)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재 국내외 경제 및 금융·외환시장 전반에 대한 관계기관 간 원활한 협조대응을 위하여 경제관계장관회의(장관급), 거시경제금융회의(차관급) 등 다양한 레벨에서 협력체계를 설치·운영해 오고 있으며, 그 결과 2008년-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2년 남유럽 재정위기, 2020-2021년 코로나19 위기 등에 신속·선제적으로 대응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3) 김현정의원 대표발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37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음.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금융행정체계 비교]

구 분		현 행	개정안
국제금융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중앙행정기관) 금융감독원 금감위 사무국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장 겸임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원 금소위 사무국 *금소위원장이 금소원장 겸임
국내 금융	금융정책	금융위원회 (중앙행정기관)	
	감독정책	증권선물위원회	
	감독집행	금융감독원(민간기구)	

○ 법 제명을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되, 각각에 대하여 집행기구(민간조직)인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두고, 각 위원장이 각 민간조직의 원장을 겸직하고, 위원회의 사무조직을 각 집행기구 내에 두도록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하여 금융감독의 독립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또한, 개정안은 금융안정정책 결정을 위한 별도 협의체인 ‘금융안정협의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여 금융안정 관련 최종 정책을 결정하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금융행정체계는 국가별로 역사·법체계·금융여건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수차례 금융행정체계를 개편해 왔으나, 2008년 개편 이후 현행 체계가 원활히 유지되고 있고, 가계부채 관리, 제2금융권 리스크 관리 등이 시급한 현 시점에서 금융행정체계 개편을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임.

○ 내용적으로는 개정안과 같이 정책-감독 구분이라는 불명확한 구분 하에 5개에 이르는 기관이 금융행정업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 금융사무 전반에 걸쳐 기관간 업무영역 중첩, 주도권 다툼, 책임소재 불명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다수의 감독기관이 조율되지 않은 목소리를 낼 경우 금융시장에 혼선이 발생하고,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며, 금융시장 충격, 경제·금융위기 발생 등 급박한 상황에서 기관간의 불필요한 이견 등으로 원활하고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아울러, 「정부조직법」을 소관으로 하는 행정안전부도 금융행정체계의 복잡성 증대, 중앙행정기관 구성 원칙 위배, 금융안정협의회 기능의 중복성 등을 이유로 개정안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임.

□ 따라서 금융행정체계 개편 여부 및 방향은 그간의 금융행정체계 개편 연혁과 그 공과(功過), 현재의 대내·외 경제적 상황, 현행 금융행정체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중대성과 시급성, 개정안에 따른 개편안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한편, 현행법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하에서는 주요 개정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함.

[현행법과 개정안 비교]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제 명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감독 기구	금융위원회	①금융감독위원회	②금융소비자 보호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원
심의·의결 기구	국무총리 소속 금융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①금융감독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②금융소비자 보호위원회
위원회 업무	금융정책, 금융기관 감독, 금융기관 인·허가, 자본시장 관리, 금융소비자 보호 등	①금감위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	②금소위 금융기관의 영업행 위 및 자본시장 감 독
위원회 구성	9명 위원 (위원장, 기재부차관, 금감 원장, 예보 사장, 한은 부 총재, 금융위원장 추천 금 융전문가 2명, 대한상공회 의소 회장 추천 경제계대 표 1명)	①금감위 9명 (위원장, 부위원장, 기재부차관, <u>금소위</u> <u>부위원장</u> , 예보 사 장, 한은 부총재, 국 회 추천 금융소비자 보호 전문가 1명·금 융전문가 1명, 대한 상공회의소 회장 추 천 경제계 대표 1명)	②금소위 9명 (위원장, 부위원장, 기재부차관, <u>금감위</u> <u>부위원장</u> , <u>공정위 부</u> <u>위원장</u> , 국회 추천 금융소비자보호 전 문가 2명·금융전문 가 2명)
업무 보좌 (사무조직)	금융위원회 사무처	①금감위:금감원 內 사무조직 설치 ※금감위원장이 금감 원장 겸직	②금소위:금소원 內 사무조직 설치 ※금소위원장이 금소 원장 겸직
자본시장 감독 등	금융위원회 內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內 증권선물위원회	

구 분	현 행	개 정 안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위원회 소관 사무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소관 사무
금융안정	<신 설>	국무총리 소속 금융안정협의회 (기재부장관, 금감원장, 금소원장, 한은 총 재, 예보 사장, 비상임민간위원 6명)
금융 법령 제정·개정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장관 (금감위 및 금소위와 협의)
국회의 통제	-금융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의 인사청문 실시	-금감위·금소위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인 사청문 실시
	-금감원 예산 및 결산은 금융위 승인을 받고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	-금감원·금소원 예산 및 결산에 대한 국회 소관 상임위 승인

2.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 및 기능별 금융감독기구의 설립

- 개정안은 금융정책 업무를 기획재정부로 이관하여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고, 금융감독업무를 기능에 따라 다시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및 자본시장 감독으로 구분하여 각각 금융감독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며, 감독 집행기구인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각각 민간조직으로 설치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3조, 제19조, 제47조, 제68조 및 안 부칙 제2조 등).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u>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u>을 설치하여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慣行)을 확립하며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 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u>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및 금융소비자보호원</u>(이하 “금융감독기구”라 한다)을 설치하여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慣行)을 확립하며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① 금융정책,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위원회를 둔다. ② 금융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제3조(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①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감독위원회를 둔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제17조(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금	제17조(금융감독위원회의 소관 사무)

현 행	개 정 안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制裁)에 관한 사항 3.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의 양수·양도 및 경영 등의 인가·허가에 관한 사항 4.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 5.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배상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6.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 금융 및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양자 간 협상, 다자 간 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융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	금융감독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된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감독 및 검사·제재(制裁)에 관한 사항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금감위 인·허가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의 양수·양도 및 경영 등의 인가·허가에 관한 사항.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아. (생략)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관련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양자 간 협상, 다자 간 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배상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6.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 금융 및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양자 간 협상, 다자 간 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

현행	개정안
<신설>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 제47조(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① 금융기관의 영업행위와 자본시장에 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둔다. ②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제61조(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별표 2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된 금융기관의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 및 검사·제재(制裁)에 관한 사항 3. 별표 2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된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 4. 금융기관 중 금감위 인·허가 대상기관을 제외한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의 양수·양도 및 경영 등의 인가·허가에 관한 사항(단,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제1항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금융기관의 영업행위 감독 및 자본시장 감독에 관한 양자 간 협상, 다자 간 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현행	개정안
제24조(금융감독원의 설립) ①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을 설립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무자본(無資本) 특수법인으로 한다. 제29조(집행간부 등) ① (생략) ②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u>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u>이 임명한다.(이하 생략) <u><신설></u> <u><신설></u>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 제19조(금융감독원의 설립) ① 금융감독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 및 이와 관련된 검사·제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을 설립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무자본(無資本) 특수법인으로 한다. 제24조(집행간부 등) ① (생략) ② <u>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감원장”이라 한다)을 겸임한다.</u>(이하 생략) 제68조(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립) ①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검사·제재 업무와 자본시장에 대한 감독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원은 무자본(無資本) 특수법인으로 한다. 제73조(집행간부 등) ① (생략) ②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원장(이하 “금소원장”이라 한다)을 겸임한다. ③~⑥ (생략) 부칙 제2조(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② (생략)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현 행	개 정 안
	다른 금융위원회의 사무 중 금융감독위원회 승계업무 및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승계업무를 제외한 업무(이하 “기획재정부 승계업무”라 한다)는 기획재정부가 승계한다. ④~⑩ (생략)

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 분리

- 개정안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정책기능을 분리하여 기획재정부로 이관함으로써 국제 및 국내 금융정책을 기획재정부로 일원화하고, 새로운 금융감독기구(금융감독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금융감독 정책 및 집행을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안과 함께 발의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70)”은 기획재정부의 소관사무 중 ‘국제금융’을 ‘금융’으로 수정하여 기획재정부가 국내 금융산업정책과 국제금융정책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른 기능 분리]

구 분		현 행	개정안
국제금융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국내 금융	금융정책	금융위원회	
	감독정책		
	감독집행	금융감독원	

-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 간에는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나, 두 기능이 금융위원회로 일원화 되어있는 현행 금융감독체계에서는 상대적으로 금융(산업)정책에 자원이 편중되어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효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두 기능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고려할 때,⁴⁾⁵⁾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통합적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인위적 분리에 따라 금융행정의 비효율, 책임성 약화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임. 금융정책과 감독은 분리되어 존재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금융안정·소비자 보호 등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금융감독 등의 정책수단을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현행 체계와 같이 단일 정부기관이 금융정책 전반에 대해 책임성을 가지고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개정안에 대해서는 금융정책 및 감독 기능의 분리를 통해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성과 인위적 분리에 따른 기관 간 책임회피의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하여야 할 것임.

4) 김경신·이수환, 「우리나라 금융감독 체계 개편 필요성 및 입법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0.11.13.

5) 2008년 정부조직 개편논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우려가 제기되었던 바 있음. 금융감독은 성문법규에 모든 감독기준을 기술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감독기구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데, 이러한 감독기구가 정책적 판단까지 하게 된다면 여타 목적을 위해 감독권한의 엄정한 집행을 유예하는 방향으로 재량권을 오남용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임. 김상조, “금융분야 정부조직 개편 방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회” 토론문, 경제개혁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공동 주최, 2008.1.31.

나. 금융감독 기능별 분리 및 감독정책-집행의 일원화

- 개정안은 금융감독 정책 및 집행을 기능에 따라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및 자본시장 감독으로 구분하고, 건전성 감독은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영업행위 및 자본시장 감독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담당하도록 하며,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을,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을 각각 겸직하도록 함.

[감독 기능]

구 분	현 행	개정안	
감독정책	금융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증권선물위원회	건전성 감독	영업행위 및 자본시장 감독
감독집행	금융감독원(민간기구)	금융감독위원회 (중앙행정기관) 금융감독원 금감위 사무국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장 겸임	금융소비자보호 위원회 (중앙행정기관) 금융소비자보호원 금소위 사무국 *금소위원장이 금소원장 겸임

1) 금융감독 기능별 분리

- 현행 금융감독체계는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기관 건전성이라는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는데, 금융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경

우,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를 우선하고 상대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하는 양태를 나타냄에 따라 대규모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⁶⁾

□ 개정안과 같이 감독기능별 이원화 체제(이른바 “쌍봉형” 감독체계)를 구축할 경우 전문성이 제고되고 소비자보호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일반적으로 쌍봉형 감독체제는 건전성 규제와 영업행위 규제 중 한 가지 업무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해당 규제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고, 효율적인 감독목표 달성이 가능하며, 영업행위 감독에 전념하는 기관이 존재하므로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장점으로 여겨지고 있음.⁷⁾

□ 다만,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에 따라 금융감독체계가 과도하게 복잡해질 경우 기관 간 업무중복·마찰 및 책임소재의 불명확 가능성, 기관 감독대상인 금융기관 입장에서의 수검 부담 증가 등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

□ 따라서,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 기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6) 국회의원 김현정, 2024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금융감독체계 개편 필요성」-금융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분리를 중심으로-, 2024.10

7) 김선정, 「금융감독체계 개편, 어떻게 해야 하나?」, 윤창현 국회의원 세미나 자료집, 2020.7.7., 38-39쪽 참조

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를 별도로 두어 금융소비자를 두
텅게 보호할 필요성과 다수의 금융감독기관 간 혼선·갈등 발생의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그 외에,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정안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소관사
무인 ‘건전성 감독 관련 사항’과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소관 사
무인 ‘영업행위 및 자본시장 감독 관련 사항’을 각각 [별표1]과 [별
표2]로 구분하여 법률에서 직접 열거하고 있는데, 관련 법률의 제·
개정시 별표의 개정을 반복해야 하고, 건전성과 영업행위 관련 사
항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소관 사무에 대한 혼란 등으로
인해 감독행정의 중복 또는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참고로 해외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금융업권별 감독체계를 유지하
는 가운데 은행 부문은 금융소비자 보호업무를 전담하는 금융소비자
보호국(CFPB,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을 2010년 7월
에 신설하였고,

○ 영국의 경우, 건전성 감독을 담당하는 영란은행 내의 감독기구
(PRC, Prudential Regulation Committee)와 별도로 공정시장질서
유지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담당기구(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를 2013년 4월에 신설하였으며,

○ 호주는 1998년 7월 11개에 달하던 연방과 주의 금융규제기구를 금

영업권별이 아닌 규제 성격의 유형별로 재편한 건전성감독원 (APRA,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과 시장 및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기관으로 독립적인 연방정부기구인 증권투자위원회(ASIC,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의 쌍봉형 체제를 채택한 바 있음.

- 반면 일본(금융청)과 독일(연방금융감독청, Bafin)의 경우에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통합형 금융감독기구체제를 유지하고 있음.⁸⁾

[금융감독 형태(IMF Working Paper No.06/57)]

구 분	특 징	국 가
기관별 모델 (Institutional Approach)	금융회사의 법률적 실체(예: 은행, 증권, 보험)에 따라 감독기구가 분리된 형태	미국, 중국, 홍콩, 멕시코
기능별 모델 (Functional Approach)	금융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영업기능(예: 상업은행 업무, 투자은행 업무)별로 감독기구가 분리된 형태	미국, 브라질, 이탈리아, 스페인
통합감독체제 (Integrated Approach)	하나의 통합감독기구가 건전성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을 함께 담당하는 형태	캐나다, 일본, 독일, 스위스, 카타르, 싱가포르, 한국
Twin-Peaks 모델	건전성 감독기구와 영업행위 감독기구가 분리된 형태	호주, 영국, 네덜란드

(자료: 김선정, 「금융감독체계 개편, 어떻게 해야 하나?」, 2020.7.7., 36쪽)

8) 그 밖에 영국·호주·미국·일본·독일 등 주요 5개국의 금융행정체계 현황은 【참고자료 2】 참조

2) 감독정책과 집행의 일원화

- 개정안은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에 금융감독 권한을 부여하여 금융감독 업무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행정권의 적법한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동시에, 민간기구인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하여 각 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감독·검사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민간기구인 감독집행기구의 원장을 겸직하도록 함으로써 금융감독 정책 및 집행의 연계를 강화하고 업무를 효율화하려는 것임.
- 감독정책과 집행기능을 분리하되, 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감독기관의 기관장을 겸임하도록 함으로써 감독 정책과 집행을 실질적으로 일원화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감독정책과 집행이 이원화된 체계로 인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검사 과정에서 제도개선 사항이 금융감독정책에 제때 반영되지 못해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확대될 수 있고,⁹⁾ 감독대상인 금융회사들이 중복규제의 가능성에 노출될 수 있으며, 기관 간 판단 차이 또는 협조 미흡 등으로 인한 감독집행상의 혼란과 비효율, 책임소재의 불명확성이 초래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한 측면이 있음.¹⁰⁾¹¹⁾

9) 국회의원 김현정, 2024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금융감독체계 개편 필요성」-금융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분리를 중심으로-, 2024.10

10) 2012년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 「금융감독체계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2012.6.8.; 2021국정

- 다만,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해 현행 체계에서도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중복규제의 가능성에 노출되지 않고,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통해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가 수립한 정책과 일관된 방식으로 감독을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규제와 집행 간 일관성, 감독집행의 효율성, 책임소재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감사 정책자료집, 「금융감독기구 체제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편방향」, 이정문 국회의원, 2021.10.

11) 참고로, 2008년 이전 금융행정체계에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이 금융감독원 원장을 겸임하는 통합감독기구가 운영된 바 있음.

3. 위원회 사무조직의 설치

- 개정안은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사무조직을 민간기구인 금융감독원 및 금융소비자보호원에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59조).

현 행	개 정 안
<u>제15조(사무처의 설치 등) ① 금융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사무처를 두며,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금융위원회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u> <u><신 설></u>	<u>제15조(조직 등) ① (생 략)</u> <u>② 금융감독위원회의 예산·회계 및 의사관리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무조직은 금융감독원에 둔다. (이하 생략)</u> <u>제59조(조직 등) ① (생 략)</u> <u>②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예산·회계 및 의사관리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무조직은 금융소비자보호원에 둔다.</u> <u>③ (생 략)</u>

- 개정안은 금융위원회 사무처 대신 금감원·금소원이 각 위원회를 보좌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정책과 집행을 일원화하려는 개정 방향에 따른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사무수행을 뒷받침하는 보조기관인 사무조직을 내부에 두지 않고 외부 민간기관에 두는 것이 정부조직구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전례 없는 사안이며, 중

양행정기관의 운영 및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외부 민간기관에 의해 좌우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¹²⁾에서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임.¹³⁾¹⁴⁾

□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금감위와 금소위에 두려는 사무조직 기능을 각 위원회의 ‘예산·회계 및 의사관리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어 최소한의 보조조직을 두려는 취지로 보이고, 사무조직이 속해 있는 금감원과 금소원 또한 금감위와 금소위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안 제18조 및 제67조) 지도·감독에 필요한 명령권 및 처분 취소권 등을 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는 등(안 제104조 및 105조) 금감원·금소원의 운영에 대한 위원회의 통제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 및 개정안과 연관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금감위와 금소위는 현행 금융위원회와 같은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데, 「정부조직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

12) 법관의 독립성(헌법 제103조)과 같이 헌법의 수권이 없는 상태라면 국회입법자는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원칙적인 민주적 정당성 매개형태를 벗어나는 행정조직형태를 창설하는 데에 신중을 기해야 함. 이현수, 「합의제 중앙행정관청의 조직법적 쟁점 - 민주적 책임성의 관점에서」,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2013.2

13) 헌법 제66조제4항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권한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그 책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과 국회에 의하여 직접 통제될 수 있는 행정기관과 그 공무원에 의하여 행사되어야 함. 따라서 금융감독 권한을 포괄적으로 민간기관에 부여하는 입법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법제처·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정부입법 정책 실무 협의회 개최 결과”, 2017.4.6.).

14) 재량여지가 허용되는 국가행위는 민주적 책임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로부터 자유로운 결정영역 형성은 입법부나 집행부 스스로 독단적 분리를 통해 형성할 수 없고, 오로지 예외적으로 특별한 헌법적 지침 등에 근거하여 정당화될 수 있음. 허완중, 「민주적 정당성」,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2012.2

원회 등 유사한 조직의 경우 내부조직으로 사무처를 두고 있고,¹⁵⁾ 행정기관에 소속되는 위원회의 경우에도 자문위원회 등에 대해서는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없으나 행정위원회에는 필요 최소한도의 사무기구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점¹⁶⁾을 고려하면,

○ 개정안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가지는 금감위·금소위의 사무조직을 민간조직 내에 두어야 할 특별한 필요성과 위원회 형태인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적 조직 구성 원리를 비교·검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¹⁷⁾

○ 또한, 민간기관인 금감원과 금소원이 정부기관인 금감위와 금소위 소관 예산(재정) 및 회계의 운영을 담당하는 것은 책임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15) 현행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방송통신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상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원자력안전위원회 모두 내부조직으로 사무처를 두고 있음.

1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위원회의 사무기구 등) ① 행정위원회에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사무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 사무기구의 구성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자문위원회등에는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常勤)인 전문위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없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사무 지원을 하기 곤란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개정안에 따르면 금감위·금소위 설치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국회 추천 전문가 2명,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국회 추천 전문가 2명 등 총 8명이 공무원으로 임명됨.

4. 국무총리 소속 금융안정협의회 구성

□ 개정안은 금융안정을 위한 최종 정책 결정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안정협의회를 두고, 기획재정부장관, 금융감독원장, 금융소비자보호원장 등 유관 기관의 장이 참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5조 등).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5조(금융안정협회의의 구성) ① 금융안정을 위한 최종 정책 결정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안정협의회를 둔다. ② 금융안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당연직으로 하며,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씩 기획재정부장관, 금융감독원장 및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금융감독원장 3. 금융소비자보호원장 4. 한국은행 총재 5. 예금보험공사 사장 6. 비상임민간위원 6명 ③ 제2항제6호에 따른 위원(이하 “임명직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임명직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되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현 행	개 정 안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정안은 금융정책기능이 기획재정부를 이관하고, 금융감독기능을 금감위와 금소위로 분리하는 금융행정체계를 도입하면서 각 기관 간의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안정협의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금융위원회는 경제관계장관회의, 거시경제금융협안간담회, 거시경제금융회의¹⁸⁾ 등 기관간 협의를 긴밀히 해오고 있으며, 경제·금융시장 불안 등에 대처를 위한 다양한 금융안정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오히려 기존의 정부조직 등과의 권한 충돌, 책임소재 불분명 등으로 옥상옥의 구조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그러나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거시경제금융회의의 경우 각각 대통령령과 대통령훈령인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¹⁹⁾ 및 「거시

18) 거시경제금융협안간담회 : 기획재정부장관, 금융위원장, 한국은행총재, 금감원장 참석
거시경제금융회의 : 기재부1차관, 금융위 부위원장, 한은 부총재, 금감원 부원장 등 참석

19)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주요경제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있게 수립·추진하고,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정부부처간의 협의가 필요한 현안사항 및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주요 정책 또는 관련 중장기계획의 재정지출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여 경제의 건실한 성장·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경제관계장관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경제금융회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²⁰⁾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융안정에 관한 협의체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려는 개정안은 의미가 있다고 봄.

○ 특히 개정안에 따라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이 기획재정부와 금감위, 금소위로 분리된다는 점에서 금융안정협의회의의 필요성 또한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은 금융안정협의회의의 심의·의결 사항에 대해 ‘금융안정을 위한 최종 정책 결정’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명시적으로 구체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
1. 경제동향 점검 및 주요 경제정책방향 설정 등 경제정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부처의 주요정책 또는 관련 중장기계획의 재정지출에 관한 사항
 3. 재정·금융·세제 등 국민의 경제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부처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부처의 장이 제출하는 경제에 관한 안건 및 보고사항

20) 「거시경제금융회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거시경제금융회의의 설치 및 기능) ① 거시건전성의 점검과 관계기관 협조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거시경제금융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거시경제 및 금융·외환시장 상황의 분석·점검에 관한 사항
2. 외환제도의 선진화 및 외환시장의 발전방안, 외환거래정보의 상시감시, 외환거래에 대한 사후관리 및 정보교환 등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한 사항
3. 그 밖에 거시경제 및 금융·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분석·점검이 필요한 사항

③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간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의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3.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5. 관계기관 간 협조 및 견제장치 마련

-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및 금융감독기구 등 관계 기관 간 상호 협조와 견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금감위 및 금소위 의결에 대해 필요시 재의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금융 관련 법령을 제·개정 또는 폐지할 경우 기재부 장관이 금감위 및 금소위와 협의하도록 하며, 금감위 및 금소위에도 법령 제·개정 요청권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06조부터 제110조까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6조(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재의요구) ①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이 정부의 금융정책과 상충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이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신용정책과 상충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이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금융소비자보호 감독정책과 상충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재의요구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한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치는 확정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 금융통화위원회 및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재의요구를 할 경우에는 재의요구의 취지 및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즉시 공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7조(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재의요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의결이 정부의 금융정책과 상충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의결이 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금융감독위원회의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 정책과 상충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재의요구가 있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는 확정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 및 금융감독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재의요구를 할 경우에는 재의요구의 취지 및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즉시 공표하여야 한다. 제108조(금융 관련 법령의 협의 및 제·개정 요청권)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금융에 관련되는 법령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 내역과 제2항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요청 내역 등을 매년 1회 이상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9조(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협조) ① 금융감독위원회가 제17조제2호에 따라 금융기관 설립 등을 인·허가하거나 제17조제3호에 따라 규정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과 관련된 규정의 제·개정 또는 폐지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 내역과 제2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요청 내역 등을 매년 1회 이상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제61조제4호에 따라 금융기관 설립 등을 인·허가하거나 제61조제5호에 따라 규정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와 미리 협

현행	개정안
<신설>	의하여야 한다. ⑤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영업행위 감독 및 자본시장 감독과 관련된 규정의 제·개정 또는 폐지를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⑥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협의 내역과 제5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요청 내역 등을 매년 1회 이상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0조(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의 협조) ① 금융감독원이 제35조제1항에 따라 규칙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원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과 관련된 규칙의 제정 또는 변경을 금융감독원에 요청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른 협의 내역과 제2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요청 내역 등을 매년 1회 이상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제83조제1항에 따라 규칙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금융감독원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영업행위 감독 및 자본시장 감독과 관련된 규칙의 제정 또는 변경을 금융소비자보호원에 요청할 수 있다. ⑥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제4항에 따른 협의 내역과 제5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요청 내역 등을 매년 1회 이상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각각 제33조제1호 및 제81조제1호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⑧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금융기관 등을 검사하였거나 금융기관 등의 경영상 중요사항을 인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검사 결과 및 금융기관 등의 경영상 중요사항 등을 상대방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개정안은 관계 기관간 협조 및 견제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내용별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장관, 금융통화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가 금감위(금소위)의 의결이 정부의 금융정책, 통화신용정책, 금융소비자보호 감독정책(또는 건전성 감독 정책)과 상충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안 제106조 및 107조), 이는 금융정책 관련 기관 간 상호견제를 통해 정책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 다만, 재의 요구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려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²¹⁾을 필요로 하므로 재의요구권이 금감위(금소위)의 고유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고, 금감위(금소위) 위원에 기획재정부차관, 금소위 부위원장(금감위 부위원장), 한국은행 부총재가 포함되어 각 기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둘째,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금융에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감위 및 금소위와 협의하도록 하고, 금감위 및 금소위가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를 기재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108조). 이는 금융감독기구와 분리된 금융정책 당국이 법령 제정·개정 권

21) 일반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한을 독점할 경우 감독기구가 정책당국에 종속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임.²²⁾

- 다만, 개정안은 금융산업 관련 법령 외에 금융감독 관련 법령의 제·개정권까지 금감위나 금소위가 아닌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바,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 및 금융 소비자보호 등과 관련된 법령의 소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²³⁾

□ 셋째, 개정안은 금감위와 금소위가 금융기관에 대한 인·허가나 소관 규정 제·개정 등 고유 업무를 수행할 때 상호 간에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상대방의 소관 규정에 대해 제·개정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109조), 금감원과 금소원도 각자 소관 규칙을 제정·변경하는 경우 상대방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상호 소관 규칙에 대해 제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금융기관 등에 대한 검사 실시 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 110조).

- 이는 금융감독 업무가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및 자

22)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할 경우, 이를 금융감독기구의 외부에 상위 기구화 하는 방안과 특수법인인 민간 감독기구의 내부 의사결정 기구화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바, 이는 금융감독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 개정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며, 금융정책 당국이 감독 관련 법령의 제정, 개정권을 전적으로 행사할 경우 형식상 정책과 감독을 분리해도 감독기구가 정책당국에 종속되는 현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임. 김기식, “금융정책과 감독의 분리, 쌍봉형 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 세미나 토론문, 2016.9.8., 62-63쪽 참조

23) 참고로, 개정안은 금감위의 소관사무로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 등의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 등을 명시하고(안 제17조제7호) 있는 반면, 금소위 소관사무(안 제61조)에는 금융소비자보호 등의 사항과 관련된 “규정”의 제·개정만을 명시하고 있음.

본시장 감독으로 분리되는 체계에서 금융감독기구 간 상호 협조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더불어 금융기관 등에 대한 검사 실시 계획을 상호 협의하여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검사대상기관의 중복 검사 수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검사업무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이 금감위-금감원과 금소위-금소원의 업무가 기능적으로 분리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 기관이 상대방의 고유 업무에 속하는 규정, 규칙 및 인·허가 등에 대해서까지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불필요한 업무의 갈등이나 부담을 야기할 우려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6. 금융감독기구에 대한 국회의 통제

- 개정안은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할 때에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 및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예산과 결산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기획재정부와 금감위-금소위 및 금감원-금소원등 금융감독기구 간 금융 관련 법령 제·개정 등 협의 및 요청 내역 등을 매년 1회 이상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41조, 제48조, 제89조 및 제108조부터 110조까지).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금융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절과 제2절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하 이 절과 제2절에서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③~⑥ (생략)	제4조(금융감독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절과 제2절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이하 이 절과 제2절에서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③~⑥ (생략) 제48조(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략) ②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절과 제2절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하 이 절과 제2절에서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현행	개정안
제45조(예산과 결산) ① 금융감독원의 예산과 결산은 <u>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u>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감독원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외부 감사를 받은 해당 연도의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및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서 및 결산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③~⑥ (생략) 제41조(예산과 결산) ① 금융감독원의 예산과 결산은 <u>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u>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감원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외부 감사를 받은 해당 연도의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및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감원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결산서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9조(예산과 결산) ①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예산은 <u>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u> 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원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소원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결산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소원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결산서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8조(금융 관련 법령의 협의 및 제·개정 요청권) ①·② (생략)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 내역과 제2항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요청 내역 등을 매년 1회 이상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09조(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협조) ①·② (생략)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 내역과 제2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요청 내역 등을 매년 1회 이상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⑥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협의 내역과 제5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요청 내역 등을 매년 1회 이상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제110조(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의 협조) ①·② (생략) ③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른 협의 내역과 제2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요청 내역 등을 매년 1회 이상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⑥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제4항에 따른 협의 내역과 제5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요청 내역 등을 매년 1회 이상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⑧ (생략)

□ 개정안은 금융감독기구에 대한 국회의 통제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내용별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개정안은 현행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임명 절차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국회

의 인사청문 절차를 통해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고, 공정·투명한 선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 둘째, 금융감독원 및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예산 및 결산에 대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의 경우, 현행 금융감독원의 예산 및 결산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는 승인 이후 보고 의무만을 두고 있는 규정에 비하여 국회의 직접적인 감독 및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 금감원 및 금소원의 재원이 정부 및 한국은행의 출연금 외에도 검사 대상 기관의 출연금 및 분담금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예산 규모가 금융회사의 출연금·분담금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²⁴⁾ 이것이 금융소비자인 국민들의 부담으로 연결된다는 점, 금융감독기구의 시장에 대한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부터 예·결산 및 업무 수행과 관련한 통제를 통해 그 운영의 적절성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금감위와 금소위가 금감원과 금소원에 대해 각각 포괄적인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금감위

24) 금감원 및 금소원의 경비는 정부의 출연금, 한국은행의 출연금, 검사 대상 기관의 출연금과 분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충당함(현행 금감원 경비 충당 수단과 동일).

및 금소위에 금감원·금소원의 예·결산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할 필요성은 없는지를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금융감독기구들 간의 상호 협조와 요청 내역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금융감독기구 간 실질적인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 및 내용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임.

【참고자료 1】 우리나라 금융 행정체계 연혁

		예산	거시정책	정책조정	세제	국고	국제금융	국내금융 금융정책	감독정책	감독집행/검사
94년이전	(평가)	경제기획원(부총리)				재무부				은감원/증감원 보감원/보증기금
		▶70~80년대 정부주도의 경제개발 마무리 ⇨ 경제기획원의 기능 재정비 필요성 확대 ▶국제화.개방화 진전 등 환경변화 ⇨ 효과적인 정부조직 대응체계 구축 필요								
1994.12~ 1998.1	(평가)				재정경제원(부총리)					은감원/증감원 보감원/보증기금
		▶재정경제원의 권한비대화 ⇨ 부처간 견제기능 상실 및 IMF 경제위기 사전차단 실패 ▶은행·증권·보험 등 권역별 감독기능 분산 ⇨ 금융감독 부실 초래								
1998.1~ 2008.2	(평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위원장/원장 겸임)
		▶예산기능이 뒷받침되지 않는 재정경제부의 정책조정기능 약화 ⇨ 경제 컨트롤타워 필요 ▶금융행정체계내 책임 불명확·리스크관리 실패 ⇨ 금융행정 책임성 강화 필요								
2008.3~ 현재	(평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위원장/원장 분리)
		▶국제금융/국내금융 정책기능 분리 ⇨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유기적 협업 필요 ▶감독부실, 금융사고·소비자피해 발생 ⇨ 감독쇄신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필요								

【참고자료 2】 해외 금융감독체계 현황

* 주요 특징

- ① 각 국의 금융감독체계는 고유의 역사·정치·헌법질서 등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
- ② '08년 글로벌 위기 이후 금융감독기구들 간 공식적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금융안정 기능을 강화하는 추세
- ③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책임성간 균형을 중시
- ④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분리(쌍봉형, twin peaks) 확산

구 분	영국	호주	미국	일본	독일	한국
-----	----	----	----	----	----	----

< 금융감독기구 형태 >

'08년 금융위기 전후 감독체계	'12년, 통합형 → 쌍봉형	'98년 부터 쌍봉형	권역별 감독 → 일부 통합(변형적 쌍봉형)	통합형 유지	통합형 유지	통합형 유지 (감독원 내부 분리 운영)
건전성 감독	영란은행 소속 PRC *자산운용사 등 일부는 FCA	APRA * 자산운용사 등 일부는 ASIC	권역별 감독기구	금융청 * 지방금융 기관 검사 는 재무성 의 지방재 무국에 위 임	Bafin * 연방은행 이 검사 지 원	■ 금융위원회 : 정책+감독 ■ 금융감독원 : 집행기관
소비자 보호	FCA	ASIC	(예금수취기관) Fed 소속 CFPB (보험·증권) 권 역별 감독기구			
금융 안정기구	영란은행 소속 FPC	CFR	재무부 소속 FSOC	금융안정회의 (금융청-일본 은행)	재무부 소속 FSC	서별관화(비공식) * 부기관장급 거금회의(공식) 존재

< 금융감독기관의 법적 성격 >

헌법·법 령상 공권력 행사주체	■ 불문헌법(의회주권) ※ 입법('99, '12)을 통해 민간 PRA FCA에 규정권 제재권 등 권한의 포괄, 직접 위임 ■ 자율규제영역 전통 계승	■ (憲) 행정권 한 (헌법과 법률의 집행과 유지)은 총독이 수행한다(\$61) ※ 입법을 통해 ASIC, APRA에 규정권, 제재권 등 부여	■ 헌법상 별도 규정 없음 ※ 개별 금융업법 등에서 감독 기구에 규정 제·개정 및 제재권한 부여	■ (憲) 행정권은 내각에 속한다(\$65)	■ (憲) 고권적 권한의 행사는 계속적 과 제로서 '일반적으로' 공법적 근무 관계에 있는 공무원 종사자에게 부여된다(\$33의4)	■ (憲)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66)
기관 법적 성격	■ 영란은행 下 PRC(민간 법인) ■ FCA(민간 법인)	■ APRA(정부기관, 공무원+민간) ■ ASIC(정부기관, 공무원+민간) * 예산·인력 운영상 자율성	- 모두 정부기관 (공무원) (Fed는 민간기구 성격도 가짐) * 예산·인력 운영상 중립성	■ 금융청(정부기관, 내각부 외청, 공무원)	■ BaFin(정부기관, 공무원)	■ 금융위(정부기관) ■ 금감원(민간인/공법상 영조물법인)

구 분	영국	호주	미국	일본	독일	한국
-----	----	----	----	----	----	----

< 권한범위 >

금융정책 (법령 제정 포함)	재무부	재무부	재무부	금융청	재무부 * Bafin: 법률 하위규정 제 ·개정 가능	금융위
감독규정 제·개정	영란은행 / FCA	APRA / ASIC	모든 감독기구		BaFin	금융위
인·허가		APRA / ASIC	OCC(연방은행), NCUA(신용조 합), 州(보험, 은행)			금융위 * 금 감 원 에 심 사 업 무 위탁
제재		APRA / ASIC	Fed, FDIC, OCC, CFPB, SEC, CFTC, 州			금융위 * 금 감 원 에 제재 중 경 징계 위탁

< 금융감독기관의 책임성 확보 장치 >

기관장 임명 등 인사권	■영란은행 총재 (PRC 長) : 총리 추천, 국왕 임명 ■FCA 長 및 이사회 위원 대부분을: 재무부가 지명 ■영란은행 이사회 의장 : 재무부 지정	■APRA 임원 : 재무부장관 임명 ■ASIC 임원 : 재무부장관 추천, 총리 임명	정부와 동일 (단, Fed는 자체 인력 운용)	정부와 동일	■BaFin 임원 : 재무부장관 추천, 연방대통령 임명	■금융위원장: 총리 추천, 統 임명 *금융위 위원 : 기관 추천 → 統 임명 ■금감원장·감사: 금융위 의결, 대통령 임명 ■금감원 부원장: 금융위 임명 *금감원 부원장 보는 금감원장 임명
예산 등 재원	■자체 운영(분담금 등)	■정부예산 특별 회계 (재원 : 분담금 등)	정부 예산	정부 예산	■자체 운영(분담금 등)	■금융위: 정부 예산 ■금감원: 자체 운영(분담금 등)
정부 등의 통제장치	■영란은행 : 의회 감사(정책 결정 가능은 감사대상 제외) ■FCA : 연차보고서 재무부는 의회에 제출 ■재무부에 매년 업무보고 및 연차보고서 보고 ■예산 및 회계 감사원 감사	■의회가 업무실적 평가 ■감사원이 회계 감사 실시 ■재무부에 매년 업무보고 및 연차보고서 보고 ■재무부 정책지시 권한 ■재무부 임원적격성 심사	정부와 동일	정부와 동일	■법령 제·개정안 입법예고 전 재무부 동의 요 ■Bafin 관련 사항에 대한 의회 대응은 재무부 소관 ■재무부의 합법성, 합목적성 감사 인정 ■Bafin 소속 예산 확정위의 의장과 부의장을 재무부가 선임	■금융위는 정부와 동일 ■금감원은 감사원 및 국회 감사 대상 ■금융위는 금감원 지도·감독 및 예결산 조직 승인권 * 위법부당한 처분 취소정지

(자료: 금융위원회)

【참고자료 3】 감독기관별 소관 사무 비교

현행 금융위	개정안 금감위	개정안 금소위
1.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	1.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 및 검사·제재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 정책 및 제도
2.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		2. 영업행위 감독 및 검사·제재
3.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의 양수·양도 및 경영 등의 인가·허가	2.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의 양수·양도 및 경영 등의 인가·허가	4. 금감위 인·허가 대상을 제외 한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 환, 영업의 양수·양도 및 경영 등 의 인가·허가
4.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	-	3.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
5.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배상 등 피해구제	5.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배상 등 피해구제	-
6.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	6.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	-
7. 1~6호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3. 1~2호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7. 1~6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의 제정·개정 및 폐지	5. 1~4호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8. 금융 및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양자간 협상, 다자간 협상 및 국제협력	4.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에 관한 양자간 협상, 다자간 협상 및 국제협력 8. 금융 및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양자간 협상, 다자간 협상 및 국제협력	6. 금융기관의 영업행위 감독 및 자본시장 감독에 관한 양 자간 협상, 다자간 협상 및 국제협력
9.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9.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
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융위 소관으로 규정	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감위 소관으로 규정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소위 소관으로 규정

문 의 처

02)6788-5104